

[붙임 1]

# 지도·점검표

## 1. 지정검사장 일반현황

지정사업자 지정번호		지정일자	
업체등록		등록일자	
등록 및 지정관청	강남구청	업체구분 (업종)	
등록업체명		사업자 (대표자)	
업체소재지 (주소)		사업장 전화번호	

## 2. 검사시설 점검표

구분		기준		적합여부
검사장 시설	검사 진로	길이	- 통합형 20m 이상, 분리형 13m 이상	
		깊이	- 5m 이상	
		너비	- 4m 이상	
	피트	길이	- 8m 이상(정밀진로를 통합진로로 운영하는 경우 6m이상)	
		깊이	- 1.5m 이상	
		너비	- 0.8m 이상	
검사진로 구성		-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이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- 눈비 등에 장애를 받지 않고 검사할 수 있는 건물구조일 것		
검사장바닥		- 차대동력계 중심축으로부터 전·후 8m 수평을 유지할 것		
차대동력계 설치 위치		- 차대동력계 중심축과 피트 진출 끝단과의 간격을 6m 이상 유지할 것		
차대동력계간거리		- 차대동력계 중심축간 8m 이상을 유지할 것 (소형 및 대형 차대동력계를 모두 설치한 업체만 해당)		
진입·진출로 확보여부		진입로	- 입구로부터 직선 10m 이상 및 대형차의 진입에 지장이 없을 것	
		진출로	- 대형차의 진출에 지장이 없을 것	
기 타		- 검사장 표지판, 검사수수료 안내 등에 관한 표지 설치여부		

### 3. 검사용 장비의 구비 및 설비

구 분	기준 및 부대조건	내 용	적합여부
사이드슬립 측 정 기 (A)	허용축중 10000kg 이상 전방 8m 수평상태일 것	- 허용축중, 정도검사일자 확인 - 답판을 고정하고 검사하는지 여부 - 모니터상의 영점 확인	
제동시험기 (B)	허용축중 10,000kg 이상 자동차 축중을 자동으로 설정하는 구조일 것 전방 8m 수평상태일 것	- 허용축중, 정도검사일자 확인 - 자동설정 여부	
속 도 계 시 험 기 (S)	허용축중 10000kg 이상 전방 8m 수평상태일 것	- 허용축중, 정도검사일자 확인	
ABS 자동판정 기록유무	ABS는 순차진행, 검사결과 자동판정 기록될 것(기기배열은 순서가 바뀌어도 무방함)	- 자동판정 및 기록 여부	
전 조 등 시 험 기	전방 8m 수평상태일 것	- 정도검사 일자 확인 - 광도계 및 좌우계, 상하계의 작동여부 - 정대경(망원경) 및 레이저 장착 여부	
가스누출 감 지 기	1대 이상 구비		
소 음 측정기	- 보통 또는 정밀소음계 1대 이상일 것 - 형식승인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제품일 것	- 정도검사일자 확인 - 건전지 수명 및 실제 사용여부 확인	
차대동력계	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받은 제품일 것	- 정도검사 일자 확인	
배출가스 분 석 기	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받은 제품일 것	- 정도검사 일자 확인	
광투과식 매연측정기	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받은 제품일 것	- 정도검사일자	
엔진전자 제어진단기	국내에서 제작된 자동차의 전자제어장치(ECU)의 점검이 가능한 제품일 것	- 작동상태 정상여부	
검사 자동차 기록용 사진기	5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촬영하였을 때에도 후부 등록번호판과 자동차 전체 모습, 검사장면이 육안으로 식별가능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으로 자료를 전송할 수 있는 전송장치가 있을 것	- 사진기가 배출가스검사의 수행과 동시에 작동되는지 확인 - 촬영상태의 정상여부(후부 등록번호판 인식 여부) - 자동차 전체 모습 촬영상태 - 전송장치의 설치여부	
매연포집기	자동차배기관으로부터 직접 포집하는 구조	- 강제구동으로 정상 흡입여부 확인	
기타	배출가스분석기 교정용 표준가스	- 표준가스 성적서 유효기간 확인 - 성적서와 가스통 수치 일치 확인 - 산소센서 고장상태 확인 - 자동측정 여부	
	매연표준필터 및 표준여지	- 표준필터 및 매연여지 유효기간 확인 - 표준필터 및 매연여지 성적서 확인 - 자동측정 기록 여부	
	타이어 깊이게이지	- 타이어 깊이게이지 확보 여부 (버니어캘리퍼스 대체 가능)	



[붙임 2]

# 지 도 · 점 검 표

## 1. 성능상태검사장 일반현황

지정사업자 지정번호		지정일자	
업체등록		등록일자	
등록 및 지정관청	강남구청	업체구분 (업종)	
등록업체명		사업자 (대표자)	
업체소재지 (주소)		사업장 전화번호	

## 2. 검사시설 점검표

구분	기준 및 부대조건	내용	적합여부
핏트 또는 리프트	정상작동 및 1대 이상 구비	작동상태 여부 및 보유대수	
자기진단기	정상작동 및 1대 이상 구비	작동상태 여부 및 보유대수	
도막측정기	정상작동 및 1대 이상 구비	작동상태 여부 및 보유대수	
카레이잭기	정상작동 및 1대 이상 구비	작동상태 여부 및 보유대수	
가스누출 감지기	정상작동 및 1대 이상 구비	작동상태 여부 및 보유대수	
청진기	정상작동 및 1대 이상 구비	작동상태 여부 및 보유대수	
멀티테스터	정상작동 및 1대 이상 구비	작동상태 여부 및 보유대수	
배기가스· 매연측정기	정상작동 및 1대 이상 구비	작동상태 여부 및 보유대수	
타이어홈 깊이계이지	1대 이상 구비 (버니어캘리퍼스 대체 가능)	보유대수 및 대체제품 비치	
배터리전압 측정기	정상작동 및 1대 이상 구비	작동상태 여부 및 보유대수	
비중계	정상작동 및 1대 이상 구비	작동상태 여부 및 보유대수	

### 3. 검사운영 관련

구 분	확 인 사 항	적합여부
방문전 점검사항	관능·기능검사 생략여부 등 정상 실시 여부	
	순차적으로 1회에 전 검사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	
	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장치의 조작 또는 탈거하여 검사하는지 여부	
	기술인력이 아닌 자가 차대동력계상에서 운전하여 검사하는 행위	
	경유자동차 종합검사시 매연 포집기 사용 여부	
기술인력	적정 인력 확보 여부 및 무자격자 검사행위	
수 수 료	수검자가 보기 쉬운 접수실 및 검사장에 게시되어 있는지 여부	
검사결과	검사결과표의 허위 작성 및 보관상태	

### 4. 점검사진

2015. 12. .

점검자      직급 : 공업6급    성명: 박노용 (인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직급 : 공업8급    성명: 고재철 (인)

## 위 반 확 인 서

상 호 :

대 표 자 :

소 재 지 : ( ☎ )

상기 본인은 2015년 월 일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귀 기관에서 자동차 종합검사와 관련된 사항을 점검한 결과, 다음 사항이 지적되었기에 이를 확인합니다.

- 다 음 -

1. 위반일시 :
2. 위반법 조항 :
3. 위반내용 :

년 월 일  
확인자(대표자) (인)(주민등록번호 : )

입회자(검사원) (인)(주민등록번호 : )

점검자 : 소속	직급	성명	(인)
소속	직급	성명	(인)

구청장 귀하

## 자동차종합검사 행정처분 기준(공동부령 별표4)

### I. 일반기준

1. 같은 자동차검사대행자,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또는 기술인력이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분을 한다.
  - 가.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또는 명령의 기준이 지정취소 또는 해임인 경우에는 지정취소 또는 해임명령을 한다.
  - 나.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명령을 하되, 둘 이상의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
2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3. 관할 관청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업무의 정지기간 또는 직무의 정지기간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정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.
4. 관할 관청은 종합검사대행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일부 사업장에서만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해당 위반 사업장의 업무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.
5. 관할 관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.
  - 가. 종합검사대행자,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또는 기술인력이 그 업무 또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자동차의 종합검사 업무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
  - 나. 그 밖에 관할 관청이 자동차의 종합검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별표에 따른 기준과 다르게 행정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6. 관할 관청은 종합검사대행자,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또는 기술인력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처분기준의 범위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가중할 수 있다.

## II. 개별기준

위 반 내 용	관계 법령	처 분 내 용	
		종합검사대행자· 종합검사이정정비사업자	기술인력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	법 제45조의3 제1항 및 제24조	지정취소	
나.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	법 제45조의3 제1항·법 제46조제2항 및 제24조	1차: 업무정지 30일 2차: 업무정지 90일 3차: 지정취소	1차: 직무정지 30일 2차: 직무정지 90일 3차: 해임
다. 자산상태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	법 제45조의3 제1항 및 제24조	1차: 업무정지 30일 2차: 지정취소	
라.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	법 제45조의3제1항·법 제46조제2항 및 제24조	지정취소	해임
마.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	법 제45조의3제1항·법 제46조제2항 및 제24조	1차: 업무정지 30일 2차: 지정취소	1차: 직무정지 30일 2차: 해임
바.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검사용 기계·기구로 검사를 하거나, 정확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검사용 기계·기구를 사용하여 검사를 한 경우	법 제45조의3제1항·법 제46조제2항 및 제24조	1차: 업무정지 10일 2차: 업무정지 30일 3차: 업무정지 90일	1차: 직무정지 10일 2차: 직무정지 30일 3차: 직무정지 90일
사. 법 제43조제2항 또는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검사에 필요한 검사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	법 제45조의3제1항·법 제46조제2항 및 제24조	1차: 업무정지 10일 2차: 업무정지 30일 3차: 업무정지 60일	1차: 직무정지 10일 2차: 직무정지 30일 3차: 직무정지 60일
아. 법 제43조제3항(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45조의3제1항·법 제46조제2항 및 제24조	1차: 업무정지 10일 2차: 업무정지 20일 3차: 업무정지 30일	1차: 직무정지 10일 2차: 직무정지 20일 3차: 직무정지 30일
자. 법 제43조제6항(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검사장면 및 검사결과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	법 제45조의3제1항·법 제46조제2항 및 제24조	1차: 업무정지 10일 2차: 업무정지 30일 3차: 업무정지 60일	1차: 직무정지 10일 2차: 직무정지 30일 3차: 직무정지 60일



위 반 내 용	관계 법령	처 분 내 용	
		종합검사대행자·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	기술인력
차. 법 제45조제1항 또는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를 한 경우	법 제45조의3제1항·법 제46조제2항 및 제24조	1차: 업무정지 30일 2차: 지정취소	1차: 직무정지 30일 2차: 해임
카. 법 제45조제2항이나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·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	법 제45조의3제1항 및 제24조	1차: 업무정지 10일 2차: 업무정지 30일 3차: 지정취소	
타. 법 제45조제3항이나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검사업무 범위 및 기술인력에 따른 검사 능력을 벗어나 검사를 한 경우	법 제45조의3제1항·법 제46조제2항 및 제24조	1차: 업무정지 30일 2차: 업무정지 60일 3차: 업무정지 90일	1차: 직무정지 30일 2차: 직무정지 60일 3차: 직무정지 90일
파. 법 제45조제7항(제45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한 경우	법 제45조의3제1항 및 제24조	1차: 업무정지 30일 2차: 업무정지 90일 3차: 지정취소	
하.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한 경우	법 제45조의3제1항 및 제24조	1차: 업무정지 30일 2차: 지정취소	
거.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해임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45조의3제1항 및 제24조	1차: 업무정지 30일 2차: 업무정지 60일 3차: 업무정지 90일	
너. 법 제66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	법 제45조의3제1항 및 제24조	지정취소	
더.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	법 제45조의3제1항 및 제24조	1차: 업무정지 10일 2차: 업무정지 30일 3차: 업무정지 90일	
러.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하거나,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	법 제45조의3제1항 및 제24조	1차: 업무정지 30일 2차: 업무정지 60일 3차: 업무정지 90일	
머. 법 제45조의3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	법 제45조의3제1항 및 제24조	지정취소	